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인영 (통일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의 기준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 제3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제8항을 통해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사실상 행정규칙에 포괄 재위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이를 정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이를 위해 그 동안 행정규칙(「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으로 규정한 운행승인기준 등을 토대로 하여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송장비 운행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으로 당해 신청의 적합성 판단(제1호), 정기운행에 필요한 실적 조건(제2호), 승인 결격 조건(제3호 및 제4호)을 규정하고 현행 영 제33조제7항의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하기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규정을 부가

하여 동 조항을 개정(안 제33조제7항)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적용시점을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안 별 표1호가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2. 03. 02. ~ 04. 11.)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운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운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한 운행 기간과 노선, 수송장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유한 자격 등이 운행 목적에 적합할 것
2. 선박 및 자동차의 정기운행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당해 항로 또는 노선에서 부정기적으로 5회 이상 남북한간에 당해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운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 승인의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운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남북한 간에 수송장비 운행과 관련하여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별표의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다목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다목에 따라 경고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① ~ ⑥ (생략)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운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운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한 운행 기간과 노선, 수송장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유할 자격 등이 운행 목적에 적합할 것 2. 선박 및 자동차 정기운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당해 항로 또는 노선에서 부정기적으로 5회 이상 남북한간에 당해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운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u>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 승인의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u> <u>4. 운행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남북한 간에 수송장비 운행과 관련하여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u>
⑧ (생략)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다목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이 경우 <u>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다목에 따라 경고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u>	⑧ (현행과 같음)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다목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이 경우 <u>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다목에 따라 경고조치를 한</u>

<u>고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u>	<u>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일부 남북경협과	
연 락 처	(02) 2100 - 5795